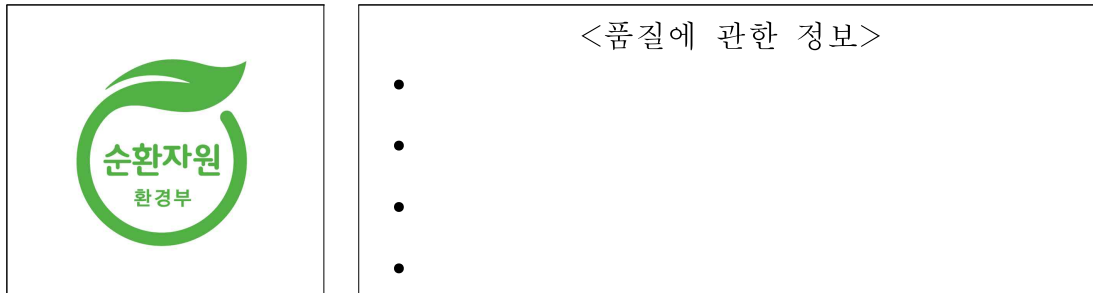


품질표지의 표시방법(제17조제3항 관련)

1. 도안 모형



- 가. 로고의 세로 길이(H)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(W)는  $0.9 \times H$  비율로 한다.
- 나. 로고의 기본색상은 녹색(C70 + M5 + Y100 + K5)으로 한다. 이 경우 C는 Cyan(청록색), M은 Magenta(자주색), Y는 Yellow(노란색), K는 Key(검은색)을 말한다.

2. 도안 요령

- 가. 도안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, 순환자원 포장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, 검정 또는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할 수 있다.
- 나. 도안의 크기는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(순환자원의 포장, 홍보 인쇄물, 사업장 간판, 인터넷 홈페이지 등)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
- 다.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가 좁아 도안 전체를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도안 모형 중 품질에 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